

---

# 경찰 내부 수사지휘에 관한 실태 및 외국례와 비교 고찰을 통한 바람직한 수사지휘 방안 연구

---

- 지휘서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

2020. 3. 27.

경찰수사연수원 융합학과 박근우

# 차 례

I. 경찰 수사지휘의 의의	1
1. 수사지휘의 개념	1
2. 수사지휘권자	1
3. 수사지휘의 방식	2
4. 수사지휘의 내용	2
II.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법적 개념	3
1. 과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3
2.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4
3.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성격	5
III. 경찰 수사지휘의 중요성	10
1. 수사지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10
2. 송치전 지휘건의 제한	12
3. 경찰 수사지휘 필요성	14
IV. 외국의 수사지휘 체계	15
1. 대륙법계	15
2. 영미법계	17
V. 수사지휘서	20
1. 수사지휘서의 의미	20
2. 경찰 수사지휘서 현황	21
3. 구두 지휘와 서면 지휘의 차이점	21
4. 서면지휘의 필요성	22

5. 수사지휘서의 대상사건과 내용 .....	23
<b>VI. 수사지휘서 작성 방법론</b> .....	24
1. 수사현황 .....	25
2. 쟁점 검토 .....	25
3. 보완 수사 .....	27
<b>VII. 상황별 수사지휘 사례</b> .....	28
1.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 .....	28
2. 민원이 제기된 사건 .....	32
3. 장기사건 .....	35
4. 신병처리 사건 .....	36
5. 검찰에 재지휘건의 요청 사건 .....	37
<b>VIII. 단계별 수사지휘 사례</b> .....	39
1. 접수·배당·피해자 조사 .....	39
2. 증거수집 및 분석 .....	43
3. 검거 .....	48
4. 피의자 조사 .....	51
5. 보강조사 .....	53
6. 종결 .....	55
<b>IX. 결론</b> .....	57

# 1. 경찰 수사지휘의 의의

## 1. 수사지휘의 개념

본래 수사지휘라는 개념은 범죄수사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의 착수에서부터 종료까지 수사의 진행상황을 하나 하나의 각 단계에서 수사책임자가 수사관의 보고를 받거나 또는 스스로 수사의 실행에서 체험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와 지시를 부여하여 수사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sup>1)</sup>

즉 수사에 참여하는 수사관들의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한 활동을 유도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수사지휘는 통상 조직상의 상명하복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경찰 조직상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은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이하에 기재되어 있다. 수사지휘권자(규칙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수사지휘방식(규칙 제14조, 제14조의3, 제14조의6), 수사지휘사항(규칙 제14조의4, 제14조의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수사지휘권자

범죄수사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간부<sup>3)</sup>는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사항에 대한 지휘를 해야 할 의무

---

1) 조국-김준호,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합리적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경찰청 연구과제 (0406-20130038), 제34쪽~38쪽, 2013. 11. 26.

2) 신양균,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경찰학연구 제13권, 2007. 4.

3) 범죄수사규칙 제13조의5(수사간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의 수사간부는 소속 경찰관서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가 있다.

경찰청장은 수개의 지방청 관할에 속하는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건, 직접 수사본부 설치를 지정하는 사건,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켜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을 지휘한다.

지방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수사규칙 별표14)과 같이 범주의 주체·대상·태양 등에 따른 중요사건을 지휘한다.

경찰서장은 별표1에 해당하지만 지방청장이 일임한 사건과 별표1 이외의 경미한 사건을 지휘한다.

### 3. 수사지휘의 방식

명시된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긴급상황, 보완지휘 및 명확한 지휘, 수사현장에서의 지휘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이나 시스템 상으로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5).

### 4. 수사지휘의 내용

지방청장은 수사착수·사건의 이송과 인계, 수사본부의 설치 및 해산 등 형식적 지휘와 피의자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및 체포 피의자 신병조치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

---

4) 범주의 주체와 대상이 정치인, 고위공무원, 법관 등 주요인사에 해당하는 사건, 내란 등 공안사건부터 다액 절도(현금 1억원 이상) 사건까지 비교적 자세히 나열되어 있다.

5) 조국-김준호, 앞의 글, 제68쪽 참조. 어느 경우나 결국 문서로 작성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범죄수사규칙은 수사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경찰서장은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송치의견에 관한 사항, 책임수사관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항은 위임 등을 통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를 한다.

## II.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법적 개념

### 1. 과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검찰은 수사지휘의 개념을 검·경간 상명하복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수사의 효율성 도모 및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감시와 통제보다는 복종이 요구되는 ‘명령’으로 이해하였다. 실제로 검찰은 현행 형소법 제196조 및 검찰청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휘’ 내지 ‘명령’의 상대방으로서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조직이 다른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그 지휘방법에 있어서도 경찰의 자율성을 훼손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는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청 직원에 대한 지휘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는 건물만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음을 말해준다.

결국 검사는 경찰에 대해 우월적 또는 지배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수사지휘를 해왔고, 심지어는 경찰조직 자체가 지휘를 받아야 할 하나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곡해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sup>6)</sup>. 이와 같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독일, 프랑스 등 검사제도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법률의 감시자’로서 경찰의 수사권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 내지 통제’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6) 조국,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2010, 564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말하자면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그럼으로써 경찰수사권 남용의 여지를 차단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수사지휘를 명분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무제한적인 개입은 경찰을 검찰에 완전히 예속시켜 검찰직원화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수사활동 자체가 가지는 탄력성, 기동성, 광역성 그리고 수사방법의 비정형성으로 인해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빠짐없는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한 시도는 경찰의 반발을 불러 '업무협조는 없고, 지휘만 존재하는 검·경관계'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검찰에 엄청난 업무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경찰은 검찰청법 제53조의 규정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수동적 복종이 요구되는 명령'으로 이해하여 '검사의 손발' 역할을 자임한 측면이 있으나(그럼에도 검사의 일방적 지휘에 경찰은 적지않게 반발하였음), 이 규정이 삭제된 이상 앞으로의 검·경관계에서도 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아무런 마찰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검찰과 경찰이 한 조직에 속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경찰의 협조없이 지금까지처럼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는 지휘만으로 범죄수사라는 국가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음을 말한다.

## 2.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경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이다. 그동안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바뀌게 됐다.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고, 수사종결권은 검

찰에게만 있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 5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축소된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수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한정된다.

이로써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유지되지만,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누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 3.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성격

#### 가. 명령과 복종의무

범죄수사규칙 제14조의9(수사경찰관 등) 제1항에 “경찰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범죄의 수사에 종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10에는 경찰관서장 등은 수사진행에 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규정이 없다. 대법원 판례<sup>7)</sup>에 따르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지만 복종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된다.

---

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직무명령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 형식적 요건으로서 첫째,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일 것, 둘째, 부하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 사항일 것, 셋째, 부하에게 직무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것, 넷째, 법령의 형식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실질적 요건으로 그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등이 요청된다.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므로 수명공무원은 이를 심사하여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로 보인다.<sup>8)</sup> 문제는 실질적 요건이다. 실질적 요건의 심사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공무원은 심사권을 넘어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이 집단으로서의 공무원의 지위가 아닌 개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모든 공무원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직무상 명령의 공익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물론 심사가 불가하다는 주장도 일견 설득력이 있다. 즉, 조직체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효율성이 공익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설의 입장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의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의 효율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토대로 하는 공익은 등가의 원칙이라 볼 수 없다. 당연히 후자가 우월한 원칙이다. 나아가 반대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같은 효력이 직무상 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대외적 행정작용을 혼동한 결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조직내부적인 명령의 복종이 바로 외부적 행정작용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양자의 위법성 또는 합법성의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무명령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더라도 수명공무원은 합법성, 공익

---

8) 김동희, 행정법 II 제19판, 박영사, 2013, 171쪽

합치성을 심사하여 직무상 명령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거부를 했어야 하는 직무명령에 공무원이 복종하면 이에 대하여 징계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 등을 져야 하는데,<sup>9)</sup> 이를 단순히 적용하여 위법한 직무명령에 거부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데 그치는 입법안은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나아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의 관계를 전혀 잘못 이해한 것이다.

#### 나. 이의제기

범죄수사규칙 제15조(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 ①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관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은 신속하게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지휘를 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독일 연방공무원법 제63조의 법조문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의 합법성이 의심되면 즉각 직속상관에게 이를 주장해야 한다. 동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은 일차적으로 공무원의 의무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남을 뿐 수명공무원

9)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 판결

의 개인 책임이 면책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면 면책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의제기 절차 제1단계에서 수명공무원은 심사결과 직무상 명령의 합법성에 의심이 생겼을 경우 망설이지 않고, 다시 말해 망설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직속상관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면 결과적으로 책임이 명령을 내린 또는 명령을 재차 승인한 상관에게로 넘어간다. 다만 직무상의 전문적인 명령과 직무상의 개인적인 명령, 즉 직무담당자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명령인지 독자적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명령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는 곧 대체로 당해 명령과 지시가 행정행위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기본관계와 경영관계의 구별과도 연결된다.

제2단계에서 직속상관이 수명공무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서 당해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 수명공무원이 한 단계 더 높은 상관에게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제3단계에서는 공무원이 형법·질서법 및 인간의 존엄성 위반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여전히 공무원은 복종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법·징계법·민사법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에 대해서는 단지 그 위반이 명백하고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만 복종 의무가 면제된다. 모든 위법한 명령은 동시에 헌법위반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타당하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제2단계에도 불구하고 당해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수명 공무원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복종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동시에 개인 책임에서는 면제시킨다. 개인 책임 면제와 동시에 다시 복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입법자

---

10) Ulrich Battis, a.a.O., S. 553.

가 수명공무원의 이익과 행정의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수명공무원이 직무상 명령의 합법성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의제기절차 이후에는 결국 당해 명령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계속성이 담보되지만 이로부터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일견 이로써 수명공무원의 법적책임만 면제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수명공무원이 원래 의도했던, 즉 직무상 명령의 위법성을 수정하고 내리려 했던 결정에 대한 합법성 증명 부담 또한 함께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즉시 직무상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상급자의 상관이 적시에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는 바로 즉시 수행해야 하거나 차상급자가 연락이 닿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이의제기제도는 수명공무원의 책임과 복종의무 상호간의 긴장관계를 알맞은 교량을 통해 적절히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행위를 수행하는 의무의 부담은 수명공무원이 지게 하되, 그로부터 개인 책임은 면제시켰다. 동시에 이의제기제도는 독일 기본법 제 20조 제3항의 법에 따른 행정을 제대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의제기제도의 폭넓은 적용을 방해하는 주요요소들은 법적인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 지위에 대해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것이다.

사실 법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대체로 무시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독일에서 이의제기절차를 활용하는 공무원은 매우 드물고 동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사실 위계질서 하에서 상관의 법적 이해가 잘못되었으니 명령을 바꾸어 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느 위계조직에서도 쉽지 않다. 이의제기제도

가 위계적 질서를 일부 수정하면서 위계의 반대방향으로 힘을 싣는 것이라는 이해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동 제도를 이용하는 수명공무원은 위계질서의 방해자로 드러나기 쉽고 상관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것이다. 수명공무원이 상관의 지시권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거부한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수명공무원이 용기를 내어 이의제기절차를 거쳤을 때 이는 결국 자신의 개인의 이익에 반할 수 있음에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의제기제도는 무용하고 의미 없는 제도인가. 동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법치행정의 구현으로 공익과 맞닿아 있으며 공익추구의 사명을 띤 공무원은 언제든지 동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관과 수명공무원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명령의 실제적 내용과 공익 합치성 등에 대해 상호 비판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동 제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 III. 경찰 수사지휘의 중요성

#### 1. 수사지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 가. 여론조사의 배경

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sup>11)</sup>이 명시되었다. 변경 조문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나뉘지만 개시권을 명문화한 부분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과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인해 현행법 체포나 고소·

---

11)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고발의 접수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수사개시권 명시화 함께 수사준칙(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는 제한되었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가 상당 부분 보장되었다.

검사의 지휘를 대체하는 경찰 내부의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여론조사의 개요

2012. 5. 23.경 전북경찰청 수사형사 워크숍 강의를 위해 전북경찰청 소속 15개 경찰서 직원을 상대로 수사지휘에 대한 설문지형 조사를 실시하여 177명이 이에 응답하였다<sup>12)</sup>.

#### 다. 여론조사의 내용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수사여건이 나아졌느냐는 질문에 42%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로 애매할 때 지휘해 줄 사람이 없다는 항목이 63.9%로 가장 많았다. 사건에 대하여 누구와 상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60%는 동료직원과 상의하고 23%는 책임자나 판례를 찾아본다고 답변한 반면 과장·팀장과 상의한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상급자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90.1%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 어떤 경우에 지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① 복잡하고 애매한 사건이 51%, ② 송치의견이 다른 경우 20%, ③ 모든 사건이 17% 등으로 조사되었다.

수사지휘의 방식은 서면을 통한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7.8%였고,

---

12) 출처: [http://prezi.com/\\_v-5kv7lt\\_9e/?utm\\_campaign=share&utm\\_medium=copy](http://prezi.com/_v-5kv7lt_9e/?utm_campaign=share&utm_medium=copy)

그 이유에 대해서는 ① 지휘 내용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가 40%, ② 구체적인 지휘를 하기 위해서가 32%, ③ 의견을 변경할 경우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인가 21%로 나왔다.

## 라. 여론조사의 의미

수사관들은 송치 전 지휘건의 제도가 없어서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그 역할을 팀장이나 과장에게 요구하였다.

## 2. 송치전 지휘건의 제한

### 가. 송치전 지휘건의 제도

2000. 9. 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책임수사제 시행지침<sup>13)</sup>’에 따라 검찰은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기관고발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송치하기 전 수사내용 및 의견을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sup>14)</sup>. 경찰관이 수사한 뒤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등의 의견 자체를 사전에 허가 받도록 한 것이다.

11년간 이어온 이 제도가 폐지되고 일부 중요 범죄<sup>15)</sup>만 제한적으로 송

---

13) 고소·고발사건 책임수사제 시행지침 (대검찰청예규 제308호, 2000.7.10., 제정)

14) 위 시행지침 제4조(송치전 지휘건의) ① 담당경찰관이 고소사건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송치하기 전에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기록에 의견서 초안을 첨부하여 수사내용 및 의견에 대한 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사지휘건의중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7조(송치 전 지휘 등)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76조에 따라 입건 지휘를 받은 사건 (대공, 선고, 노동 등 공안사건)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 및 그 미수범으로 입건한 사건
3.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의 사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 송치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치전 지휘를 건의를 하도록 하여, 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판단(의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송치전 지휘건의 현황

KICS 통계를 보면 수사준칙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에 전국 지휘건의 건수가 496,363건이고, 시행 후인 2012년에 전국 241,258건으로 51.4%가 감소하였다<sup>16)</sup>. 전체사건의 3.5%가 전북청 사건이므로 지휘건의 사건이 2011년도 17,000여건, 2012년도 8,000여건으로 추정된다.

2016년도 전북청에서 총 5,278건의 수사지휘건의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2011년도에 비하면 70% 가량 감소하였고, 2012년도에 비하면 30% 가량 감소하였다. 하지만 교통분야를 제외한 전체사건 16.2%<sup>17)</sup> 정도의 사건을 검찰에서 지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많은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지휘 받는 것은 검찰이 검찰청 접수 사건을 경찰을 통해 하도급식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직수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검찰에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접수한 뒤 관할 경찰서로 보내 경찰이 수사토록 한 뒤 송치를 받는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수사준칙에 따라 송치 전에 검찰의 지휘건의를 받아야 한다. 2016년도 전북청 직수사건은 2,478건으로 전체사건(교통제외)의 7.6%나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송치 후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사건도 직수사건처럼 송치 전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016년 전북청 송치 후 지휘사건은 1,357건으로 전체(교통제외)의 4.2% 정도이다. 직수사건과 송치 후 지휘사건을 합하면 전체(교통제외) 사건의 11.8%에 이른다.

---

16) 최연석, 형소법 개정 이후 수사지휘 관련 실태분석, 내부 보고서, 2013. 12. 10.

17) 교통분야는 수사지휘에 영향이 미미하여 제외하였고, 강력·지능·여청 전체사건 32,495건 중 5,278건의 수사지휘건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나의 사건에서 2회 이상 수사지휘를 받는 경우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수치는 실제보다 높을 것이다.

위 16.2% 검찰 지휘건의 사건 가운데 직수사건 7.6%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8.6% 사건이 검찰 지휘를 받고 있고, 그 중 받은 송치 후 수사지휘 나머지 받은 송치 전 지휘로 보인다. 하지만 1건으로 여러 번 지휘건의서를 작성하므로 4% 미만의 사건에서 송치전 지휘건의를 받고 있다.

### 3. 경찰 수사지휘 필요성

설문조사와 지휘건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 수사에 의견까지 강요하던 송치전 지휘건의 제도가 유명무실 해졌다. 경찰이 수사 후 그 결과(의견)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 대한 부담이 그에 비례하여 커졌다.

수사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부실수사나 편파수사를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럴 때 가장 유효하게 사용한 수단이 검찰의 수사지휘 내용이었다. 경찰 수사관들은 검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는 지휘내용을 내밀며 민원을 피해갔다.

검찰의 수사지휘는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만은 아니었다. 검찰의 지휘내용을 통해 실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였고, 사실관계·법리해석 등에서 수사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 결과 검찰 수사지휘에 의존하는 폐단이 생겼고 상급자인 과·계(팀)장 보다 검찰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수사관들도 있었다. 이런 검찰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수사준칙에 명시되면서, 일선 수사관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졌다.

경찰서 과·계(팀)장 등 중간 수사지휘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송치전 지휘를 통해 검찰 지휘를 받는 시기에도 중간 수사지휘자들은 각자의 지식과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해왔고,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하여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역사에 남지 않았다.

## IV. 외국의 수사지휘 체계

### 1. 대륙법계

#### 가. 배경

대륙법계 형사사법은 국가의 형벌권을 전제로 출발하므로 범죄를 개인 간의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의 법질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국가는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및 재판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범인을 처벌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에서는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국가 사법관료(판사, 검사)가 ‘사실을 규명(확정)’하는 자로서 역할하며 ‘스스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형성·정착되어 있다.

직권주의 형사사법체계는 공판절차를 주재하는 법원과 공판전 절차를 주재하는 검찰 및 공판전 절차에서 수사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법경찰로 권력이 분배되어 있다. 그런데 직권에 의한 조사 특히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직권주의의 특징인데, 법원의 직권조사가 너무 초기단계부터 시작되어 판결에 까지 이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공판전 조사 절차를 두어 사실심 법원으로 하여금 수사활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으며, 공판전 단계의 조사권한도 쪼개서 중죄사건의 공판전 조사는 원칙적으로 예심판사가 하게 하는 등 조사권한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프랑스는 이러한 구조를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예심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공판전 조사절차인 수사절차를 검사가 주재하도록 하였다.

경찰조직도 영미법계와 달리 철저한 자치경찰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 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는 권력을 분점한 법원, 검찰, 사법경찰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관간 통제구조를 갖는다. 즉 중앙집권적인 사법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권을 가지고 통제하고, 검찰의 처분 등을 법원이 통제하며, 예심제도를 두는 경우는 중죄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예심판사를 검사가 통제하고, 예심 결과에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공판절차에서도 검사가 법원을 견제하고 법원의 오류를 상소권 등으로 견제하는 것이다.

#### 나. 수사지휘의 형태

검사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와 이를 계승한 독일,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확립되어 있다. 왜냐하면 수사는 범죄 발생 이후에 사법적으로 국가 형벌권의 존부를 규명·확정하는 절차인 “검찰권(Justiz)”에 속하는 권능으로, 치안유지 내지 위험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Polizei)” 작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이 확고히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권력분립상 수사는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므로 수사권은 사법관(예심판사, 치안판사 등)이나 준사법관인 검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규문주의 형사사법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추시점을 전후로 전(前)단계 사실규명(수사)의 책임은 검사에게, 그 후(後)단계 사실확정의 책임은 판사에게 맡겨 검사와 법원이 서로 견제토록 하는 사법권력의 분할에서 그 방안을 찾았던 것이지만, 소수인 검사가 모든 수사활동을 직접 담당할 수 없으므로 수사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 보조인력

이 바로 “사법경찰(Kriminalpolizei)”로서 행정경찰(Schutzpolizei)과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경찰의 구성방법으로는 사법기관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과 행정경찰 일부를 사법경찰로 지명하는 방법이 있는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대륙법계 국가가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전제되지 않는 사법경찰의 수사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사법경찰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수사주체로 활동하는 근거가 바로 검사의 수사지휘에 있는 것이다. 2016년 6월 프랑스가 형사소송법 제39-3조<sup>18)</sup>를 신설하여<sup>19)</sup>,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핵심적인 역할을 확인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확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2. 영미법계

### 가. 배경

영미법계 형사사법은 국가라는 형벌권의 주체를 상정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도 민사소송처럼 사인 간(an individual against an individual) 분쟁, 즉 시민 대 시민, 시민 대 국왕 간의 분쟁과정으로 파악하는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사실을

---

18) 프랑스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제39-3조 ① 사법경찰(police judiciaire)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는 수사관(enquêteur)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관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질 등을 통제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제적 진실을 증명하는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 뿐만 아니라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19) LOI n° 2016-731 du 3 juin 2016 renforçant la lutte contre le crime organisé, le terrorisme et leur financement, et améliorant l'efficacité et les garanties de la procédure pénale - art. 54.

확인”하며, 사법관은 사인 간의 공방절차만을 주재 내지 관여할 뿐 “ 스스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는 형사사법 체계가 형성· 정착되어 있다<sup>20)</sup>. 왜냐 하면 본래 사인소추제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는 형사절차가 민사절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의 규명을 위한 수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방의 당사자로서 공판정에 제출할 증거의 수집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sup>21)</sup> 그리고 이처럼 국가의 배타적인 형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나 개인의 의뢰에 따라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고 법정에서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는 사설탐정이 필요하게 되며, 변호사의 독자적인 조사능력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사자주의 형사사법체계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 후의 짧은 기간(통상 48시간 이내)까지의 조사만 허용하는 경찰수사와 이후의 법원에 의한 예비심문절차, 그리고 공판정에서의 사실확인으로 이루어지며, 공판정에서의 사실확인과정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로서의 소추관(검사)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상의 권력은 초동단계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 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 그리고 공판정에서 소송지휘권 및 양형권한을 행사하는 판사와 사실판단자로서의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법원으로 분배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원·검찰·경찰로 권력이 분배된 당사자주의에서는 각 기관들이 모두 독립적이어서 지휘관계나 통제관계가 없는 대신, 이러한

---

20) Harry R. Dammer/Jay S. Albanese,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s, 5th ed., Wadsworth Publishing, 2013, p. 12

21) 미국에는 형사소송에만 적용되는 증거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만 존재하며, ‘연방형사증거법’이나 ‘연방민사증거법’이 없다. 그러므로 미국 연방증거법은 검찰이나 피고인을 모두 당사자(party)로 지칭하고, 검찰피의자신문조서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별도로 취급하는 규정을 아예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사자의 법정 외에서의 진술에 해당하며 따라서 전문증거인지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연방증거법 제 801조(d)는 전문증거가 아닌 것의 하나로 당사자 본인의 진술(An Opposing Party's Statement)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권력기관들을 철저히 분산함으로써 그 자체가 커다란 권력기관으로 등장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통하여 주민의 철저한 직접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 내에는 통일된 조직으로서의 국립경찰이 없으며, 연방(Federal), 주(State)·카운티(County)·시(City)별로 다양한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은 다른 상급 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다. 법원의 경우도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사이에 위계관계가 없고, 주 안에서도 지방법원판사와 항소법원 및 주상고법원의 판사 사이에 관료적 위계관계나 승진개념이 없다.

## 나. 수사지휘의 형태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관이 행하는 수사활동은 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소추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가 그 본질이며, Charge<sup>22)</sup> 이후 사실규명(수사) 과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절차주도 하에 당사자 간 법정(法廷) 공방으로 진행된다. 배심제도와 사인소추를 원칙으로 하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하에서, 특정인에게 범죄혐의가 지워진 후에는 사실규명 및 형벌부과를 위한 모든 절차가 법원에서 사인 간 투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미법계에서는 법원·검찰·경찰 등 어떤 기관도 혐의자를 직권적으로 신문하는 사실규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미법계 검사도 소추 대리인 자격으로 출발한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행위를 지휘·통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상정하기 어렵고,

22) Charge란 경찰이나 다른 공소기관이 피고발자를 범죄혐의로 법원에 고발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위 경찰의 Charge는 사인(私人)의 자격으로 행한 것일 뿐, 경찰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미에 있어서는 경찰 또는 검사(public prosecutor)가 법원에 범죄혐의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보통 'charge' 또는 'lay information'이라 하지만, 이를 대륙법계 제도와 비교하여 검사의 '기소'로 보는 것보다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경찰이 법원에 고소 내지 고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김종구 외,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408면). 여기서는 '공판회부'로 번역하기로 한다.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영미법계 경찰에는 구속권, 피의자신문권, 대질조사권 등 직권적·사법적 수사권한이 전혀 없으며, 영미법계의 ‘검사’는 대륙법계의 검사와 달리, 사실조사를 하는 수사절차의 주재자가 아니라 피해자 내지 경찰을 대리한 소송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하다. 결국 검사가 수사상 경찰을 지휘할 필요도 적은 것이며, 그러한 연유로 영미법계에서는 본래의 행정경찰과 구별되는 사법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수사만을 전담하는 수사경찰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Detective 또는 Investigator라고 부르며 일반 경찰(Police)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 V. 수사지휘서

### 1. 수사지휘서의 의미

범죄수사규칙 서식의 가장 앞에 있는 ‘서식 1’이 수사지휘서이다. 수사지휘서는 2007. 10. 30.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설<sup>23)</sup>되었다. 신설이유는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수사지휘서는 서면 양식이다. 범죄수사규칙과 수사준칙<sup>24)</sup>에 지휘는 서면(KICS)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구두로 하고 이후 서면지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23) 제18조의2(수사지휘) ① 수사지휘는 수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면 수사지휘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8호 서식의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서식의 결재·수사지휘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식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4)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그러나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3-4년 전에 수사지휘서에 대한 실적 평가하였는데, 그 당시 형식적<sup>25)</sup>인 수사지휘서 남발로 지휘서에 대한 의미가 곡해된 적도 있었다.

수사지휘서는 지휘사항을 서면으로 남겨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고, 서면으로 기록해야만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지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경찰 수사지휘서 현황

2016년 전북청 전체 수사지휘서 작성 건수는 356건이다. 군산서 85건, 정읍서 68건, 익산서 66건, 완주서 30건, 부안서 27건 순이고 나머지는 극히 미미하다. 전체 처리 건수(교통제외) 32,495건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건에 여러 번 수사지휘서를 작성했을 수 있다면 1% 미만으로 볼 수도 있다.

KICS를 통해 이 가운데 몇 개의 지휘내용을 확인하니, 과거 지휘서 건수를 실적으로 잡았던 폐단이 일부 남아 있어 3~4줄의 형식적인 지휘서가 있었다<sup>26)</sup>. 이런 허수를 제외하면 수사지휘서를 활용한 수사지휘는 거의 없고 중간 지휘자인 수사과장, 강력·지능팀장 약 100여명은 수사지휘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검찰 서면 수사지휘는 경찰 수사지휘자들의 구두 지휘에 흡수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 3. 구두 지휘와 서면 지휘의 차이점

25)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입출감시 신체수색에 만전을 기할 것',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의견을 도출할 것' 등이 자주 사용되던 문구였다.

26) 반면 수사과장이나 경제(지능)팀장 중 일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휘를 하였다.

구두지휘는 휘발성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추후 기억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두지휘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 어투와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동일한 표현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구두지휘는 전파될수록 틀려진다. 전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잘못 전파되어 있는 그대로 옮기기가 무척 힘들다.

반면 서면지휘는 불변성이 있어 파기되거나 추후 수정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 수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그대로 기록된다. 서면지휘는 기록성이 있어 지휘 내용이 수사서류에 첨부되고 재판 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보관된다. 서면지휘는 일관성이 있다. 글을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나 구두지휘와 달리 그 뜻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서면지휘는 체계성이 있다. 서면지휘를 하려면 기승전결에 따라야 하고 이유와 근거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 4. 서면지휘의 필요성

정부의 모든 일은 ‘공문서’에 의한다. 그래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sup>27)</sup>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은 우리 경찰청에도 적용이 된다.

경찰기관의 내근 근무자는 책임자의 말(지시)을 문서에 옮기는 일을 한다. ‘OO회의시 당부사항’ 등의 제목으로 작성된 서류가 대표적인 예이다. 공공기관의 어떤 일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일처리에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공문서’에 의한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안에 대한 진실공방을 목격한다. 누가 무슨 말을

---

27) 대통령령 제27697호, 2016.12.27

했는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대립하는 양측은 그 말을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두고 들은 사람과 말한 사람이 각자 다르다. 만약 누군가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을 해두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2012년 12월 소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지방경찰청 청장과 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이 엇갈렸다. 수사과장은 청장이 압수한 컴퓨터의 키워드 분석을 100개에서 4개로 축소시키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했고, 청장은 국정원에 요청에 따라 당해 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사 문제를 고려해 그렇게 지시했다고 맞섰다. 재판 결과는 무죄로 나왔지만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논란 초반에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없이 공방만 이어졌다. 이는 수사지휘 사항이 공식적인 지휘서가 아닌 구두(전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장은 수사지휘서를 활용하여 국정원의 요청사항과 위법수사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설득)했어야 했다.

## 5. 수사지휘서의 대상사건과 내용

모든 수사지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북청 2017년 1월 검거건수가 3,281건으로 미제사건 내사종결 사건을 포함하면 이보다 많다. 형사과 39개 팀을 포함하여 100여 개의 팀이 있는데, 이들 중간 책임자 팀장 또는 계·과장은 매일 수 십 건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① 복잡하고 애매한 사건, ② 장기 미처리 사건, ③ 민원 야기된 사건, ④ 강제수사(신병처리) 사건, ⑤ 검찰 지휘건의 사건, ⑥ 상급자와 의견이 다른 사건 등을 선별하여 수사지휘할 필요가 있다.

수사지휘의 내용에 대하여 범죄수사규칙에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송치의견에 관한 사항, 책임수사관

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도록 하였지만, 그 내용을 세밀하게 규율하지 못하는 조항은 한낱 이념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28)</sup>.

지휘 내용은 수사의 개시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 있어서 적정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내려야 하는 판단이나 결단이 기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찰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하시모토 칸(橋本環)이 주장한 수사지휘 십칙을 살펴보겠다.

① 지금 이 사건을 문제 삼는 것이 좋은지 여부(착수시기), ② 이러한 내용·정도의 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치판단), ③ 단서에 불순한 것은 없는지 여부(공정성), ④ 법률 적용상 의심스러운 부분은 점은 없는지 여부(의율), ⑤ 지금이 피의자를 잡을 시기인지 여부(검거시기), ⑥ 피의자 신병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신병조치), ⑦ 수사는 과학적·합리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합리성), ⑧ 범인과 증거에 관련이 있는지, 진술·거증 등에 무리는 없는지 여부(거증), ⑨ 사건의 결말을 어디에서 지을 것인가의 문제(결론시기), ⑩ 필요한 연락·보고는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수사연계)가 수사지휘 내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시모토는 주장한다.<sup>29)</sup>

## VI. 수사지휘서 작성 방법론

수사지휘서 양식은 사건번호와 수사관 등을 기재하는 사건식별 부분과 지휘내용을 기재하는 본문 부분, 지휘자의 서명·날인을 하는 서명 부분으로 나뉜다.

본문 부분에 기재할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범

---

28) 조국-김준호, 앞의 글, 제68쪽

29) 조국-김준호, 앞의 글, 제39쪽

죄수사규칙에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수사지휘는 쟁점형 수사결과보고서와 비슷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쟁점형 수사결과보고서는 인정되는 사실, 쟁점 검토(증거제시와 논증), 의견제시 순서로 구성된다.

아래에서는 수사지휘서를 수사현황, 쟁점검토, 보완수사 순서로 설명하겠다.

## 1. 수사현황

수사현황은 그 동안 수사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다. 흩어져 있는 증거를 모아 분류하고 논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작업이다. 특히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 가치가 있다.

이런 정리 작업을 거쳐야 미흡한 부분과 오류 부분을 찾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피해조서 및 피신 1회, 대질 1회, 거짓말탐지기 의뢰 중인데,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폭행 및 강간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10주간의 어깨뼈 골절 및 치아파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본건은 사건 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소가 되었고, 남녀간에 있었던 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로 피해 진단서만 있을 뿐이다라는 내용으로 수사현황을 정리하였다.

## 2. 쟁점 검토

어떤 쟁점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조사나 증거수집이 미흡한 부분을 발견

하게 된다. 이는 수사관 판단에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여겼으나 그 판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당사들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먼저 수사현황을 정리하면서 사건의 쟁점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 쟁점에 대한 근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세부적인 보완 지휘를 할 수 있다.

쟁점에 대한 검토 부분은 진술증거, 물적증거, 간접증거, 직접증거 등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판례나 이론을 근거로 들며 수사관의 판단에 대한 보강 또는 오류를 지적한다.

예를 들어 피의자 이00에 대하여, 그는 00중공업의 크레인 신호수인 정식직원으로, 문제가 된 샤키의 설치 및 크레인기사를 포함하여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등 작업의 현장책임자로 보여지고,

조명이 어두워 55톤 샤키를 찾지 못해 7개 샤키중 1개만 35톤 샤키로 설치한 점, 사고 샤키는 국산이라 강도가 좋지 않았던 점, 샤키 검사를 회사측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눈이 와서 미끄럽고 경사면이 있어 위험한 것을 인식한 점 등으로 보아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회사에서 작업을 지시하였다지만 위험을 예견하고 결과를 방지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피의자 이00에 대하여, 그는 00중공업의 안전관리자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실행자는 증거가 충분하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입건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이후 보완수사 부분에 기재하면 된다.

### 3. 보완 수사

수사현황, 쟁점검토를 거치면 구체적으로 지휘할 부분이 분명해진다. 이제 보완수사 부분에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다.

쟁점 검토가 ‘명시적인 이유와 근거’를 찾는 부분이라면, 보완 수사는 ‘구체적 지휘’를 하는 부분이다.

과거 검사들은 위 수사현황과 쟁점검토 부분을 생략하고 보완수사만을 수사지휘하였다. 가끔 친절한 검사는 판례와 규정을 설명하였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를 보면서 검사의 의도를 파악하곤 하였다. 일부는 검사가 무슨 의도로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 검사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보완수사 부분은 수사지휘의 핵심이다.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 수사상황을 정리하고 쟁점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사내용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단지 OO을 불러서 조사하고, OO에서 자료를 수집하라고라는 내용의 지휘가 아닌 특정인과 특정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① 비록 보관되었을 가능성은 낮지만, 아파트CCTV를 확인해 보고 이를 수사보고로 남겨놓을 것(언제까지 녹화되었는지 여부등), ②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사건 발생 당일 및 전후 양자의 통화여부 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양자가 리코더나 연필 이외에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것이나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시간 순에 따라 기록할 것(양자의 관계추론), ③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친척이나 지인등 누구와 상의했는지 상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조사하고, ④ 피해자가 보았다는 피의자의 팬티를 확보하여, 사진촬영 첨부 등의 방법으로 기록에 남기고, 피해자를 통해 피의자의 몸의 특징점(옷을 벗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조사하고, ⑤

위 정황증거를 수집한 후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보완수사 사례가 있다.

## Ⅶ. 상황별 수사지휘 사례

수사지휘 사례는 경찰서 강력계장, 지능팀장 등을 하면서 필자가 작성한 수사지휘서이다. 1건의 지휘에 짧게는 3-4시간 많게는 며칠이 걸렸고,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수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검토하였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휘 내용에 오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렇게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니 넓은 양해를 바란다.

### 1.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 I

#### 가.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모텔업주로 피해자들이 모텔에 옥탑방에 투숙하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유리로 덮힌 천장에서 바라보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사건이다.

피해자는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되는 사안이라며 판례 등을 들어 입건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 나. 수사지휘 내용

##### 1) 죄명 적용에 대하여

본건을 형법 제319조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으로 단속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방실침입의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신체적 침입으로 해석하고 있어, 들여다 보는 것은 침입으로 볼 수 없고, 외부로부터 침입이어야 하는데 본건은 모텔업주가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본건 피해자들이 있었던 모텔방은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었고, 평소 옥상 출입문은 열쇠로 잠궈 관리하는 것을 보면 모텔방과 옥상의 밀접한 거주공간이고, 이는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장소로 보이므로,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최대한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경범죄처벌법 제1조 49호 무단출입을 검토하였으나, 출입금지 장소로 보기 어렵고, 형법상 폭행을 검토하였으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추가 조사 사항

본건과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이 동 모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① 본건 모텔에 천장유리를 설치한 것이 건축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건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공문 발송하고, ② 피해자들이 방안에 CCTV가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므로, 방안에 가서 CCTV 설치여부 확인하여 수사보고 첨부하도록 지휘하였다.

## 2.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 II

### 가. 사건의 개요

건물 철거현장에서 A철거업체와 B철거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A가 철거작업을 하다 폐기물이 나와 폐기물 처리 자격이 있는 B가 들어와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A, B에게 하청을 준 원청 업체와의 계약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B는 계속 작업을 하고 A는 중단된 작업을 B가 아닌 A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는 작업장 입구를 덤프트럭으로 막고 고철의 반출을 막았고,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대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장에서 A는 고철의 소유권이 A에게 있다며 고철을 운반하는 B를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업무 권한이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양쪽을 설득하여 상황은 마무리 되었지만, A가 B를 고철 절도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철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A, B의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해야 했다.

## 나. 수사지휘 내용

### 1) 절도죄에 대한 법률검토

고철의 소유부분에 대하여, 본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고철양도의무를 지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고철판매대금 지불의무와 건물철거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으로 보이는데,

비록 공사가 20여일 상당(9월 중순~10월 초) 중단되어 계약종료 기간인 8. 30.을 한참 벗어났고, 계약상 대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고소인 측에서 묵인한 상태라 하더라도,

공사가 90%상당 진행된 점(既납부금액 5억4,000만원, 사건후 가져간 고철 6,000만원상당), 10. 20. 이후에는 도급인이 농협측에 지체상환금(매일 106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점, 도급인 측에서 수급인을 위해 3억1,000만원의 대금을 면제해주어 협상여지가 있었던 점, 미지급금 1억2,000만원 상당(피의자가 제출한 계약서)이 잔금으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지연보상금 등을 이유로 공사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피의자가 현장에서 본인의 공사장비를 모두 철수시킨 시점(9월 중순경)에서 양자간의 계약이 일단락 되었다고 보여지며, 피의자가 의무(철거 및 대금지불)를 이행하지 않고 고철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할 수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계약해지는 정당해 보이며, 고철의 소유는 철거작업을 한 고소인 측에게 있어, 피의자에게 절도죄 혐의가 있다.

불법영득의사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계약해지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사실상 공사를 도급인 측에서 하였고, 추후 명확한 정산을 위해 고철 반출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하다.

## 2) 보강 수사에 대하여

피의자들을 상대로 절취당시에 공모여부, 각자의 역할분담 부분과 있었던 장소 및 종업원인 김OO과 정OO(피의자 김OO는 정OO을 김OO의 친구로 알고 있고, 정OO에게 지시한 것은 없다고 함)이 동 회사에 어느 정도 근무했고 본건 공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성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도,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위력 부분(피의자 김OO은 김OO의 지시를 받아 포크레인으로 막은 부분만 인정) 및 역할 분담에 대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업무방해(15일간 포크레인으로 입구봉쇄로 어떤 작업에 어떻게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를 당했는지 조사하고,

피의자 정OO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으나, 김OO와 김OO을 상대로 위부분을 재수사한 뒤에, 계속해서 정OO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소재수사 등

실시할 것으로 지휘하였다.

### 3. 민원이 제기된 사건 I

#### 가. 사건의 개요

피해자 나이는 80세로 공장의 노동자였다. 피의자는 공장의 사장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배우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울면서 호소하였고, 수사과장과 경찰서장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당시 경찰서 1층 현관에서 큰 소리로 통곡을 수 차례하여 수사관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 나. 수사지휘 내용

##### 1) 의견 및 수사방향에 대하여

①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후, 다시 공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던 점, ② 사건당시인 8. 9.경 신고치 않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인 8. 24경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③ 병원진료시 상해부분에 대해서 일체 진술하지 않은 점, ④ 상해의 병명과 진료내용이 본건 상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⑤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보이고,

폭행죄 관련하여 피해자는 머리로 받았다고 하나, 명자국이나 상해진단서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피의자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오직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았다고 진술하므로 이것 또한 입증하기 곤란하다.

이 내용으로 보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①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간 점 ② 이전에 어깨나 목부위를 진료받지 아니한 점(피해자 주장) ③ 본건으로 해고되었고, 목격자인 피의자의 배우자와 박OO은 진술이 명확치 않거나, 진술하지 않은 점 ④ 양자의 충돌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11. 30.자 진술조서(피해자)를 토대로 다시 한번 혐의여부를 확인해 봐야할 것임, 피의자의 폭행과 상해관련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폭행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추가조사 후 의견을 검토할 것

피해자 고OO 부부가 11. 24. 11:00경 수사과장실에 찾아오고, 11. 29. 경 경찰서장실을 찾아가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 피해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본 서류에 첨부함과 동시에 폭행과 상해의 직접성을 재검토하고, 피의자가 망치로 위협을 당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 피해자가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므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대질하여 망치사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 참고인 박OO이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 계속해서 방문하거나 접촉을 시도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고, 양자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에 응할 것인지를 문의하여, 응하겠다면 거짓말 탐지기까지 활용해 보도록 할 것으로 지휘하였다.

## 4. 민원이 제기된 사건 II

### 가.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지인으로 모임을 하는 사이나, 기분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여 도로변에서 서로 밀치는 등 사건이 발생하였다.

서로 자신이 맞았다고 맞고소를 하였고, 옆에 있던 주변인들도 거들었

다면 추가 고소를 하는 상황이었다. 대립이 심한 시점에 수사관이 한쪽 편에게 커피를 주고 친절하게 대했다며 편파 수사를 의심하고 계속해서 청문 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나. 수사지휘 내용

### 1) 사건의 수사상황

피의자 박00은 오00가 ① 어깨를 잡고 밀쳐 도로옆 화분에 가슴을 부딪침, ②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뒤 주먹으로 여러차례 폭행, ③ 넘어진 상태에서 3회가량 발로차서 오른팔 관절, 겨드랑이에 멍이 들, ④ 등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밟음, ⑤ 왼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는바

10. 20. 진술에서 ⑤번 멍이든 부분에 대한 폭행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②번은 1회 진술에는 없으나 이후에 주장하는 등 진술의 내용이 약간씩 변경된다.

추가고소에서 김00의 경우, 오00가 ②번 상황에서 자신을 잡아 공범이라고 주장하나, 최초 고소장엔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오00, 김00, 김00 등은 박00이 오00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잡으려고 쫓다가 김00의 마티즈 차량에 충격하여 넘어졌고, 양자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오히려 박00이 오00를 밀쳐서 오00가 음식물통에 충격했다고 주장(맞고소)한다.

### 2) 추가수사

박00이 두 번째로 들린 00이네 업주와 00 옆 가게 까투리 여주인(목격자로 추정)을 상대로 참고인 수사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마티즈 차량을 세워두고, 당사자들을 상대로 시물레이션(재연)을 하도록 하여, 사진과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 당일 오00가 신고 있던 신발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 12. 9.까

지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지휘하였다.

## 5. 3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사건

### 가. 사건의 개요

학원에서 해고된 피의자가 해당 학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고 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피해자(학원 원장)이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팀에 주요 사건이 있었고, 고소 사건이나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3개월이 경과되고 있었다.

### 나. 수사지휘 내용

#### 1) 죄명 적용과 혐의여부 판단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첫날은 학원수업이 끝난 시간이고, 3시간 가량 피해자 신고 없이 같은 공간에 있던 것으로 보아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를 통보받은 후 이 사유에 대한 문의코자 한 점 등으로 보아 업무방해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날도 몇 시간동안 신고 없이 학원에 머무른 점, 크게 수업에 방해 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마쳤다고 참고인 박OO가 진술하는 점, 큰 소리가 한번 났고 이후 소리가 나지 않아 수업을 했다는 참고인 이OO가 진술하는 점, 신고 후에 경찰관들이 학원에 같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면, 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성을 질러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폭처법(공동 퇴거불응) 위반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정당행위를 주장하나, 피해자가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당해고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각종 요구사항은 반드시 대면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긴급성과 보충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퇴거불응의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 퇴거불응 기수시점을 명확히 할 것)

## 2)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할 것

출동경찰관들은 첫날은 01:02경 신고를 받았고, 둘째 날은 18:04경 신고를 받았다고 하므로, 고소인을 상대로 신고를 늦게 한 이유가 무엇이고, 신고하기까지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받고,

보충하여,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위력부분이 나오지 않으므로, 고소인을 상대로 위력행사 부분을 좀 더 조사받고,

둘째 날 출동한 경찰관은 피의자들이 18:45경 나갔다가, 18:52경 다시 들어왔다고 하므로, 이 부분 확인하여 위 내용이 맞다면 범죄사실을 둘로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지휘하였다.

## 6. 신병처리 사건

### 가.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부부사이인데 피의자가 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수사관과 책임자 사이에 의견이 달라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 의견이 대립하였다.

### 나. 수사지휘 내용

피의자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기타 고려사유를 검토하여 판단하면, ① 증거인멸우려, 피의자가 칼로 위협한 부분을 부인하나, 부엌칼 사진과 자녀들의 진술, 탁자의 칼자국 등 증거가 충분하고, 피해자가 현재 집에서

나와 여성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등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부족하고, ② 도주우려,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일정한 주거도 있는 것으로 보여 도주우려도 없어 보이며, ③ 기타 사유, 피의자의 죄질이 중하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나, 피의자는 전과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므로 재범의 우려도 적어보여 불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지휘하였다.

## 7. 검찰에 재지휘건의 요청 사건

### 가. 사건의 개요

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에 지휘건의를 했으나 수사관의 수사내용에 반하는 즉 불기소 방향으로 재지휘가 되었다. 수사관 의견을 보충하고 우리 팀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뇌물수수의 쟁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재지휘 건의하도록 하였다.

지휘를 위한 사건 법리 검토의 내용이 많아 축약하여 기술하겠다.

### 나. 수사지휘 내용

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뇌물은 ① 공무원의 직무 ② 직무관련성 ③ 대가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직무관련성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의자 김OO가 OO 직책을 갖고 행한, 군금고 선정과 보조금 지급·관리 업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감면은 군청와의 관계 때문에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

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 감사에 발각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거리가 먼 순수한 사적행위도 아니다. 그리고 경쟁 금융기관이나 타 보조금 지급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OO중앙농협의 채무감면 행위는 OO의 금고선정과 보조금 업무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살만 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대가성 부분인데, 이는 2가지로 나뉜다.

첫째, 채무감면 이후에 보조금이 증가하지 않았고, 군금고 지정은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여 대가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OO중앙농협 이사회 회의록이나 수납대행약정서 등을 보면, 군금고 선정과 관련된 이익이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익으로 확인되고, 피의자가 받은 이익이 현실적 또는 현재적 이익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호의적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이익을 수수”한 경우, 즉, 포괄적 선처를 부탁한 경우에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둘째, 공여자의 채무감면이 정당한 행위라는 부분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다. 다시 말하면, 뇌물죄에 대한 판단은 증뢰자가 아니라, 수뢰자인 직무집행을 행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증뢰자의 채무감면 행위가 규정이나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대가성 등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뢰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의자 김OO가 OO중앙농협으로부터, 군금고 선정과 보조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대가로 OO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본건 피의자 김OO의 수뢰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재지휘 건의할 것을 지휘하였다.

## Ⅷ. 단계별 수사지휘 사례<sup>30)</sup>

### 1. 접수·배당·피해자 조사

#### 가. 반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후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3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5호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고 재수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고소·고발인도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소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사개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11년 전에 차용금을 교부한 후 변제약속을 최근까지 하였으나, 변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재산상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본래의 차용금의 교부시기가 범행종료시로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반려사유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5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사개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지휘한다.(근거 판례, 2006헌마821, 불기소처분취소)

#### 나. 배당지휘

<민사사안을 고소한 경우>

---

30) 서울청 윤종탁 경감의 수사지휘 사례, 수사연수원 수사지휘서 작성 매뉴얼(안)

본건의 고소 범죄사실은 ‘고소인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000관리하는 법인, 피고소인들은 위 아파트의 시설팀장, 시설과장, 전기대리기사인 자이다. 피고소인들은 2018. 5. 23. 10:30경 위 000 시설관리근로계약 종료일에 임박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42번지 소재 000의 관리실에서 겨울철 한파등을 대비하여 설치한 스노우멜팅 시스템을 2018. 5. 23. 10:30경부터 2018. 7. 4.까지 가동시키는 수법으로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해당기간 발생한 전기료 17,006,6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여 업무상임무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에서는 위와 같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단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략~

수사권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사용해야할 공공재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본건이 민사사안에 불과함이 판단된다면 조속히 종결하여 그 담당수사관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임이 분명함에도 피의자가 불상이거나 도피 중으로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동일한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지 못하며 국가형벌권을 정당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인지, 진정, 고발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죄명변경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본건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접수되어 이송된 사건이나,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의 관리소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명목으로 53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1호는 중략~

따라서, 피의자는 고소인의 관리소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명목으로 530만

원을 수수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없으며 관리소장 직을 유지하도록 도와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530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을 사기죄로 변경한 후 피의자조사 하시길 바랍니다.

####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한 경우>

본 건의 고소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이 9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횡령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소인의 법인계좌에서 다수의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일부 도박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거수집과 피의자신병확보를 위해 아래의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가 계좌이체한 계좌명의를 중략~즉시, 체포영장과 사전통신자료허가신청을 하여 신병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위 지휘사항을 본 수사지휘서가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3일이내에 모두 수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피해자 조사

일반적인 수사민원사건은 민원서식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이를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속 수사 여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사유 중 필요적 고려사유로서 피해자 대한 위해 우려와 범죄피해의 중대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화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사건의 경우 사건 전반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대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조서화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간이 진술서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인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하거나 특정되지 않은 범인에 대

한 인상착의 등 주요 단서들을 풍부하게 진술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나 성폭행 피해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사에 관련 법령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고, 조폭 사건 등 보복폭행 우려가 있는 경우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지휘권자는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피해조서의 형식과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피해 진술의 증명력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진술의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 내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또는 주요 부분에서 반복 시 신빙성 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표현방식이나 지엽적인 부분에 반복·모순·착오가 있더라도 사건 장소, 당시 상황, 사건내용, 범행 시 가해자의 행동 및 사건 후 피해자의 태도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면 신빙성 인정</li> </ul> </li> <li>• 그러한 피해를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한, 피해 당시 경험 자체에 대한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li> <li>• 만일 성폭력피해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기억회상 및 진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非일관적인 것이라면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임상평가결과, 관련 심리학 이론·논문 등) 확보 필요</li> </ul>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지적능력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을 당사자의 경험 언어, 평소의 단어수준을 사용하여 상황을 묘사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발생 당시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빙성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상황(나이, 경험, 지능, 인지능력 등),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시간의 경과,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li> </ul> </li> <li>• 피해 경험과 관련한 느낌, 감정, 생각, 정황 등 세부적 묘사가 풍부한 지</li> <li>• 논리 및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li> </ul>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의 행위 당시 인상착의, 체격,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가해자의 신체적·행위 당시 특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li> <li>• 피해내용과 사건장소와의 부합여부(例: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li> </ul>

	<p>놓여서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범죄장소는 피해자가 누울 정도의 공간이 없는 경우/이때 부합 여부의 모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재청취 필요), 사건 장소에 대한 내용들, 사건 시점에 대한 객관적인 요소들, 가해자가 하였던 말과 사용하였던 단어, 가해자의 행동적 특성에 부합하는 평소 성향이나 습관,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와 머무른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당시 가해자의 행동 및 범행 방법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상황, 범행상황 및 피해 부위와 부합하는 객관적 요소(상처 사진, 진단서 등)</li> <li>• 사건 전후로 나눈 대화 내용(가해자, 주변인 등) 및 이를 입증할 만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SNS, 이메일, 편지, 기지국 위치 등</li> <li>•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진단이나 주변인의 의견</li> <li>• 최초접촉자(신고출동 지역경찰, 신고자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반응과의 부합 여부</li> <li>• 사건당시, 사건 전후 연락을 취한 사람과 그 내용</li> </ul>
진술오염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신뢰관계인, 조사자에 의한 영향, 유도·암시·폐쇄적 질문기법, 부적절한 조사방법 등</li> <li>• 특히 연령·장애 등으로 피암시성에 취약한 피해자일수록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에 의한 진술오염 주의</li> </ul>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과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과 진술시점이 근접할수록 유도 및 암시에 의한 진술 오염의 가능성, 다른 목적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판례 有</li> <li>• 상당기간 후 알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밝히기 어려웠던 사정, 시간이 지난 후 알리게 된 경위, 알린 시점 전후의 피해자와 가해자 및 주변인과의 관계 등</li> <li>• 피해자가 허위, 다른 목적 등으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지</li> </ul>

## 2. 증거수집 및 분석

### 가. 추가(보강) 증거 자료수집

혼다코리아에서 판매한, 혼다어코드 차종이 신차판매시부터 부식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자동차딜러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위 자동차회사의 대표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2005도8645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혼다어코드는 예전부터 판매 중인 신차가 부식되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판매하고 있어 한국YMCA에서 항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한국YMCA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받을 것, ②혼다코리아 본사에서 차량을 판매할 때 차량부식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것, ③혼다코리아의 경우 차량을 판매할 때 자동차딜러는 어떤 사항을 체크하도록 내부지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우선 수집한 후,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휘하며 본 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이고, 이와 관련하여 수회 언론보도가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자단체가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아직 검찰의 결정이 없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건종결 전 언론보도가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여 주시길 지휘하였다.

## 나. 분석(진위 여부) 및 방향

수집된 방대한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에서 수사관은 분석결과에 기초한 가설 내지 추론이라는 가치판단을 함께 적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와 같이 수사관의 가치판단이 담긴 수사보고서 등의 수사서류는 경험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증거 내용으로 공판의 증거결정 절차에서 변호인측의 증거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자료 분석결과와 가설 및 추론은 서식(수사보고서 등)<sup>31)</sup>을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3504 판례 취지에 따르면 수사보고서는 그 작성자의 공판 기일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경우 증거능력이 있으나, 경험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판단 또는 의견이 기재된 경우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작성자의 진정성립 진술이 있다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울산지법 2013고단2999 참조). 따라서, 공범관계 A의 기지국 내역과 B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와 별도로 상호 연락하에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추론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다. 압수수색 및 집행시 유의사항<sup>32)</sup>

(형식적·절차적 요건) 영장 신청서의 작성 명목이 ‘사법경찰관’인지, 영장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영장 종류를 제대로 선택 작성했는지(일반·계좌추적용·통신사실확인자료, 사전·사후 구

---

31) 수사보고서의 경우 판례상 전문증거로서 수사기관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기재된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만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압수수색영장 신청시 고려사항(대구청 체크리스트 참조)

분),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등에 압수·수색의 경우 피의자로 입건하였는지(고소·고발 외),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청구시한(체포시부터 48시간 내 등)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임의제출물은 아닌지, 영장을 신청하는 법원·검찰청의 관할 사건이 맞는지 등을

(혐의의 소명)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였는지, 내사(수사 초기) 단계에서 단순히 수사 단서를 수집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아닌지, 적시한 혐의와 관련된 영장인지(별건 압수·수색영장 여부), 여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시 여죄에 대한 범죄 혐의 입건 및 소명을 충분히 하였는지(확인되지 않은 여죄, 혐의가 없는 사항은 범죄사실에서 제외) 등을

(압수·수색의 필요성) 신청서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였는지,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물이나 몰수대상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발견할 개연성(증거 확보 가능성)을 소명하였는지, ①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큰 주거지 및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의 경우 비례의 원칙(필요 최소한도)을 준수하였는지, ②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였는지, 現 수사단계에서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을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 압수·수색할 장소, 물건 등을 영장신청서 자체로도 특정되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범죄 관련 일체자료, … 등’과 같이 특정성 결여 여부 확인), 제3자의 신체·물건·주거 등의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하여야 할 물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를 첨부하였는지, ‘불상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라도 최소한의 특정을 위한 자료 첨부하였는지 등을

(저장매체 대상 압수·수색)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범위)만 특정하였는지, 저장매체 전체를 압수할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소명하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라. 범인 특정 및 혐의 입증

현재까지의 수사사항을 정리하면 용의선상에 A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3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것을 지휘하였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지) 평소 부부 사이 등 가족관계, 병원 입원 관계자들과의 관계(특히, 입원 환자 B의 경우 이미 피해자와 사회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평소 은원 관계 등 피해자 주변 사회관계 특이점 확인

병원상대 참고인 B가 언제 어떤 사유로 입원을 하게되었는지 입원기록 등을 확인(특히 신경호가 피해자보다 늦게 입원을 하였다면 병실배정에 B의 관여가 있었는지)

(자작 가능성) 피해자는 음용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음용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동 병원의 의료 과실에 따른 입원사실 등에 비추어 보험사기 및 병원 음해를 위한 자작극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보험 가입내역 및 금전 채권채무 관계 등 재산 상태와 이전 병원 진료 내역 확인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여부 신중하게 검토 필요

(불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범행인지) 병원 책임자 대상으로 병원 운영 및 고용 등에서 원한 관계 여부 확인

위 항목들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507호 환자들 및 해당 층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병원관계자)들의 수사경력 조회하여 유사 범행 여부 확인할 것을 지휘하였다.

### 3. 검거

#### 가. 검거계획

<사건1> 피의자는 현재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해제하고,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고 잠적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이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습성으로 보아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가 본인 인증, 계좌 개설 등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별정통신사로 추정) 등을 파악하고, 휴대전화번호가 특정되면,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통신사실허가서를 신청할 것을 지휘하였다.

<사건2>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인지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꺼버린 상황이지만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010-0000-0000 번호를 사용하는 공범과 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010-0000-0000 번호에 대해 긴급 실시간 위치추적 및 통화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허가서를 신청할 것을 지휘하였다. 또한 사후허가서 신청서에는 통화위조 및 행사는 사회적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범죄이니만큼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여 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기재하시길 지휘하였다.

#### 나. 관련 서류

<사건1> 이전 수사과정에서는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긴급체포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모두 사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피의자 김○○은 수사기관의 출석 종용 및 출석요구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도주함에 따라 피의자 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계획입니다.

한편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할 경우 체포현장 이외의 장소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없으면 강제 압수수색이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긴급 체포된 공범들의 경우 이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차량 등에서 다량의 증거물 등이 발견되었던 수사경험을 비추어 보면 피의자 김○○의 주거지 및 차량 등에서도 이건 관련 다량의 증거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신청 시 피의자 김○○의 주거지 및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같이 신청할 것을 지휘하였다.

<사건2>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서○○은 금일도 자금세탁 의뢰를 받아 금액을 인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 서○○은 자신의 사무실을 2~3일 내에 불상의 장소로 이전할 것인데, 이 사무실에는 이건 관련 중요 서류들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이 사무실이 이전하기 전에 신속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막고,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거 및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력이 없으므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신청하고, 신청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것을 지휘하였다.

<사건3> 긴급체포한 피의자 이○○의 진술에 의하면 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계좌 제공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압수한 피의자 이○○의 휴대폰의 워챗 대화내용(상세내용은 수사보고(피의자 이○○, 지○○ 공범관계 자료 참조)을 보면 지○○이 이○○보다 상선이거나 최소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자 내용에는

2~3일 내에 추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을 예고하는 문자가 있으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고 긴급통신사실허가서를 신청할 것을 지휘하였다.

#### 다. 검거

<사건1> 피의자 서○○을 긴급체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연 제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팀원들 간의 의견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참고인의 진술증거도 범죄혐의를 판단하는 증거인 점, 제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뢰도도 제3자를 통해 확인한 점, 이전 사건에서도 피의자 서○○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했던 점, 피의자 서○○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인지하고 휴대폰을 꺼놓았는데 만약 범죄혐의가 없다면 갑자기 휴대폰을 꺼놓을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범죄혐의는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긴급체포의 요건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의자 서○○을 긴급체포할 것을 지휘하였다.

<사건2> 위조수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피의자 이○○를 신속히 검거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체포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화내역, 실시간 위치추적)를 발부받았으나 피의자 이○○는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인지하고 휴대폰을 꺼놓은 상황입니다. 한편 피의자 이○○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참고인 김○○과 수원구 소재 금은방에 위조수표를 행사할 때 같이 수원 부근에 있었고, 최근 5개월 사이에 참고인 김○○과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발신 382, 역발신 546)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피의자 이○○은 현재도 참고인 김○○과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이○○를 신속히 검거하여 위조수표가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분석지원팀은 참고인 김○○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화내역을 긴급으로 확인할 것을 지휘하였다.

## 4. 피의자 조사

### 가. 일반

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살인사건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5일이 소요된 만큼 그 기간 동안 사회적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이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어 검거 이후에도 장기간의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조사하기를 지휘하였다.

① 피의자가 범행 전 사전계획이 있었는지, 범행도구는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등 조사할 사항이 많으므로, 부득이 심야조사가 필요하니 그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바랍니다. ② 심야조사를 감안하여 피의자에게 충분히 휴식을 부여하며 조사바랍니다. ③ 피의자는 현재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친정어머니를 신뢰관계자로 동석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범행 전후에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통화기록으로 보아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친정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신뢰관계자(변호인 등)을 동석시키고 그 사유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 바랍니다.

### 나. 피의자 신문 준비단계

본 건은 무인텔 업주인 피혐의자가 성인과 청소년이 이성혼숙 하게 한

것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된 적용법조와 관련하여, 무인텔의 경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 제8호(이성혼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략~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적발보고서의 범죄사실을 수정한 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조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본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변사사건처리 외에 현장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조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사지휘하였다.

① 최초 목격자와 신고자 조사 외에 현장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조치 및 관련 서류 즉시 확보 바랍니다. ② 현장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는 향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 관리 소홀의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사를 받되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조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참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따라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

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

## 5. 보강조사

### 가. 혐의인정

현재까지의 수사사항을 정리하면 범인 A의 자백 진술, 수집된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다만,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범행 재구성을 위해 실황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법정에서의 증거 채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범행장소 수연모텔 302호 객실에서 실황조사를 실시하되, 범행 재구성에 있어 조사가 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재현을 충실히 실황조사서에 기재하고 진행과정에서 범인이 제시하는 의견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진술거부권 고지 및 신문조서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기 바랍니다.

### 나. 혐의부인

현재까지의 수사사항을 정리하면 수집된 증거자료 00, 00, 00 등을 토대로 범인의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 A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혐의 증명을 위해서는 추가로 00, 00, 00의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 범행부인 피의자 진술의 일관되지 않은 모순점을 부각시키고 범행사실을 추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 추가 조사에 앞서 수집된 증거자료는 피의자에게 먼저 제시하지 않고 범행일시장소경의 알리바이 등 행적 등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는 대로 조서에 기재하고, 그 반박자료를 진술청취 후 제시하며 추가 변명진

술 및 행태 등 정황에 대해 조서에 기록하고, 조서기록과 증거자료의 대조를 통해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검토한 수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다. 피의자제출 증거자료 검토

<사건1> 현재까지의 수사사항을 정리하면 범인은 혐의부인에 유리한 SNS 게시글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혐의 입증에 중요 참고자료가 될 해당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 작성되었는지, SNS 계정 접속 아이피 자료 확보, 로그기록에 있는 접속매체 식별정보 및 CCTV, 접속매체 악성 코드 감염 여부 확인, 해외업체(facebook 등)로부터 게시글에 대한 로그기록을 확보하고 그 분석결과에 대한 별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사건2> 현재까지의 수사사항을 정리하면 범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자필 진술서가 본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본 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심의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필 진술서에 대해 지면에 담긴 필적, 지문, 성분 감정분석 등을 국과수에 의뢰하기 바랍니다.

#### 라. 진술 보강 및 대질신문

현재까지의 수사사항을 정리하면 고소인은 ~~~ 라는 A취지의 주장을 하고, 범인은 ~~~라는 B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00,00,00 등에 비추어도 위 양측의 주장 진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질조사가 필요합니다.

A, B 상대로 ~~~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현장 목격자나 참여자가 있는지, ~~~한 주장을 증빙할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해 대질조사 실시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가 있을 시 이를 종합검토하여 ~~~한 사정에 대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 6. 수사종결

우선 본건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7. 26. 피의자들이 강원도 양구군을 포함하여 18개의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에 “‘시내버스(농어촌버스)재정손실금 산정용역’업무는 월가계산용역업무에 해당된다는 답변서를 통보 받았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 기록1/2권 49쪽의 ‘시내버스 재정손실금 산정용역’에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질의(사단법인 지방계약원가협회17-031(2017.5.16.)호)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대중교통과-3272, 2017.5.16.)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

한편, 수사결과보고서의 의견개진 순서를 ① 다툼없는 사실(변경필요없음)의 아래에 ② 쟁점되는 사실을 추가하여 본건 고소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고소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수행한 업무는 학술용역업무에 해당된다고 하고, 피의자들이 위 답변서의 회신내용이 월가계산용역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단정적 표현이 없었음에도, 마치 월가계산용역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국토부로부터 받았다면 18개의 강원도 내 지자체에 허위사실의 공문을 발송하여 양구군을 포함한 6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위계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위와 같은 공문의 내용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를 쟁점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③ 수사관의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2003도5004)을 말하며, 판례(2006도3839)는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피의자들은 국토부 훈령 제4조 2항에서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원가산정자료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어 있는 점(1/2권 기록13쪽)과 국토부 회신내용(해당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을 유권해석하면 해당 용역은 원가계산용역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시내버스 재정손실금 산정용역'이 어떤 용역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각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보이기에 해당 용역이 명확히 어떠한 용역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① 고소인의 회사가 학술연구용역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② 공문 발송 후 고소인은 태백시청, 양양군청과 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의자들이 협회 본연의 업무로서 업무영역을 지켜달라는 안내 및 공정한 법집행으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④ 지자체들에 발송한 공문(기록1/2권 51~59쪽)을 보면, 국토교통부회신내용을 그대로 첨부한 점을 보았을 때, 피의자들이 위계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의

견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다툼없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쟁점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흐름으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관외의 다른 결재권자들을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휘하였다.

## IX. 결론

경찰 수사지휘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휘는 모든 사건에 의무적 규정이 아니고 필요시 선별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휘를 할 경우에는 ‘서면, 시스템’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휘가 구두로 이루어지고 구두지휘는 휘발되어 사라지므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같이 사라져왔다.

일선 수사관들은 검찰의 서면 수사지휘를 중간 지휘자들이 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럼에도 외부기관인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때면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다.

수사지휘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그 기록은 보존되어 지휘자와 실무자의 책임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경찰 수사지휘의 핵심은 범죄수사규칙 별지 서식1인 ‘수사지휘서’이다. 원칙이 사전 서면지휘이고 예외로 지휘 후 수사보고 등에 기록하는 것이므로 지휘자들은 원칙대로 지휘서를 활용해 지휘를 해야 한다.

수사지휘 내용은 크게는 조직과 인원에서부터 작게는 영장 신청여부까지 다양하다. 사실 어떤 내용을 지휘할 것인가를 상세히 조문에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용이 형식을 지배한다는 헤겔의 대논리학에 나오는 문구처

럼 내용이 불명하면 그 형식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지휘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첫째는 그 동안 수사사항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수사현황’, 둘째는 수사의 단서와 증거를 배열하여 체계화하는 단계로 소위 구조화 작업으로 볼 수 있는 ‘쟁점정리’, 셋째는 정리와 구조화 이후 발견된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채우도록 하는 ‘보완수사’ 부분이다.

끝으로 수사지휘에 의욕은 있으나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지휘자들을 위해 지휘사례 몇 개를 첨부하였다.

수사지휘서의 작성은 의욕만으로 불가능하다. 150km의 강속구를 던지고 싶어하는 투수는 많다. 하지만 그걸 던지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즉, 자기개발을 통해 능력을 키워야만 수사지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선투수 수사지휘는 오히려 수사의 방해가 되기도 한다. 경찰수사연수원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수사지휘서 작성방법을 강의하였다. 강의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은 작성기술이 아니라 중간 지휘자들의 인식전환과 수사관과의 소통이었다.

인식의 전환으로 수사지휘서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뒤에는 반드시 일방적 수사지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지휘라는 표현은 복종과 억압의 봉건시대의 표정을 담고 있다. 사실 지휘라는 단어를 지도나 지원으로 바꿔 생각해야 한다.

지휘를 하기 전에 수사관과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수사관의 수사방향이나 의도를 확인한 뒤에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진정한 지휘는 마음을 움직이는 지휘여야 한다. 말을 가슴에 남고 글을 머리에 남는다고 한다. 머리에 남기는 서면(글) 수사지휘 이전에 대화(말)를 통해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지휘가 수사지휘자들이 가져야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1. 조국(2010),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찰청 연구과제
2. 최연석(2013), 형소법 개정 이후 수사지휘 관련 실태분석, 내부 보고서
3. 조국-김준호(2013),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합리적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경찰청 연구과제 (0406-20130038)
4. 신양균(2007),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경찰학연구 제13권
5. 정웅석, 최윤이(2018) “우리나라 수사절차 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제10권 제1호, 23~63.
6. 우미형(2017)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그 한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8호, 355~380.
7. 경찰청, 강제수사 작성기법, 2018
8. 경찰청, 수사결과보고 작성기법, 2018
9. 경찰청,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기법, 2018
10. 김정철,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 1, 2, 3, 헤르메스, 2018
11. 노수환, 핵심 형사기록 (제2판), 필통북스, 2016
12. 대검찰청, 검찰 결정문 작성례, 2007. 9.
13. 법무연수원, 기록메모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4.
14. 법무연수원, 수사지휘론, 2003
1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Ⅱ), 2014
16. 사법연수원, 검찰실무 I, II, 검찰서류작성례, 2018